

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봉양순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557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3월 31일

발 의 자: 봉양순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김규남, 김성준,
김영철, 김원태, 김인제,
김재진, 남창진, 민병주,
박승진, 박춘선, 박철성,
서준오, 송도호, 송재혁,
오금란, 왕정순, 유정인,
유정희, 이영실, 이용균,
이원형, 임종국, 전병주,
최민규, 한 신, 홍국표
의원(27명)

1. 제안이유

-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원 지급금액 기준인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별표6이 삭제됨에 따라 장학금 지원 기준금액을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장학금 지원 지급금액 기준 마련(안 제19조제1항제3호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, 「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구대조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지급금액: 고등학생은 「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별표에서 정한 고등학교 수업료 연액의 이내로 하고, 대학생은 고등학교 수업료 연액의 200퍼센트 이내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(장학금 지원) ① 시장은 소방재난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	제19조(장학금 지원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2. (생략)	1. 2. (현행과 같음)
3. 지급금액: 고등학생은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별표 6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대학생은 고등학생 지급금액의 150퍼센트 이내로 한다.	3. 지급금액: 고등학생은 「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별표에서 정한 고등학교 수업료 연액의 이내로 하고, 대학생은 고등학교 수업료 연액의 200퍼센트 이내로 한다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9조(장학금 지원)제1항 제3호에 장학금 지원 지급금액 기준을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별표 6에서 「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별표에서 정한 고등학교 수업료 연액으로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부서(소방재난본부)에서 예산을 기편성하여 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[참고] 2025년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관련 분야별 예산 내역

조항	사업명	예산액(천원)
제19조	의용소방대 운영	3,339,209
	(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원)	(281,640)

※자료: 2025 서울시 예산서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주병준

추계세제팀장 김중헌

추 계 분 석 관 김지혜

☎ 02-2180-7952

e-mail : kjh0123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